

협동조합 전기공급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전기공급약관(이하 “약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제82호(이하 “규제특례”)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전기판매사업자”)이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규제특례”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한다.
-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된 약관을 따른다.
- ③.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별도의 사업규정으로 관리하고 고시한다.

제3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태양광 전력”이란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 ②. “태양광발전설비”란 “전기판매사업자” 소유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전기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설비를 말한다.
- ③. “전력거래”란 “전기사용자”가 거주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플랫폼”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플랫폼서비스”란 “규제특례”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의 “플랫폼”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협동조합과 “전기사용자”인 조합원 간의 “전력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4항 및 10항에 따르며, 같은 법 제7조 3항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수행하는 “경

북우리집RE100 제2협동조합”을 의미한다.

- ⑥. “전기사용자”란 “전기판매사업자”인 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사용 및 거래하는 자는 자로서, “규제특례”에 따라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조합원 개인을 말한다.
- ⑦. “중개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자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를 의미한다.
- ⑧. “전기사용계약”이란 “전기사용자”가 거주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매월 사용하고, 해당 전력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월별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받기로 신청하는 계약이다.

제4조(“전기판매사업자”의 역할)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매월 일정량의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 외 기본전력 공급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세칙을 준용한다.

제5조(“중개사업자”의 역할)

- ①.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며, “전기판매사업자”(협동조합)와 “전기사용자”(조합원) 간의 “전력거래” 계약 체결을 대행한다.
- ②. 제3조제②항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대행한다.
- ③.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의 정산,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한 “태양광 전력” 공급량의 계량 및 청구, 정산을 대행한다.
- ④.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량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 정산한다.
- ⑤. “중개사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전기사용자”의 역할)

- ①. “전기사용자”는 제19조 요금의 계산을 위한 제18조 계량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 ②.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계약” 기간 중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한다.
- ③. “전기사용자”가 위의 언급된 업무에 비협조 시 “전기판매사업자”는 손해배상(위약금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약관의 준수)

- ①. “전기판매사업자”, “중개사업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역할과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전기사용계약

제8조(전기사용 신청)

-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는 자(이하 “전기사용자”)는 사전에 본 약관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계약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중개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전기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용자” 명의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명의로 동일하여야 한다.
- ④. “전기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전기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세대주인 전기사용자
 2. 단, 세대원이 기존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의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명의 변경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전기사용 신청은 매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기사용계약”은 익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전기사용 신청의 승인과 거부)

- ①. “전기사용자”가 “중개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전기사용계약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을 승인한다.
 1. 서비스 대상 지역 거주 여부
 2. 신청 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미납 여부
 3. 기타 공급계약에 의한 전기 사용 여부 등의 승인조건
- ②. 제9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개사업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본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4조(“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

- 금 미납으로 해지된 “전기사용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전기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전기사용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한다.
1. 전기사용계약서 상의 체결일
- ②. “전기사용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 ③.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기사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5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전기사용장소 및 전기 계약종별)

- ①.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 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전기 계약종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용한 주택용전력에 한정한다.

제12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

- ①.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개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재신청하며, 해당 “전기사용자”는 계약 변경을 위한 업무에 협조한다.
- ②. “전기사용계약”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재신청일의 익월 1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1. “전기사용자”가 기존 “전기사용계약”시 납입한 가입금액은 익월 10영업일에 “전기사용자”의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해지 후 재신청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용계약”해지 후 재신청할 수 있다.
1. 이사 등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가. “전기사용자”가 “중개사업자”승인 시 “규제특례”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 공급구역 내 다른 곳으로 전기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전기사용자”는 5영업일 내로 “중개사업자”에게 반드시 전기사용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미 통지 시, 미통지로 인해 “중개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전기사용자”가 부담한다.

- 다. 변경된 전기사용장소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 공급이 불가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다.
2. 매매·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가입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가. 계약의 해지 및 재신청에 수반하는 비용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한다.
- 나. 계약의 해지 및 재신청에 수반하는 비용은 실비 및 제반비용 일체를 청한다.
- 다. 위의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신청은 문서(별지 1호 및 3호 서식)로 한다.

제13조(“전기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중개사업자”에 알려야 하며, “중개사업자”는 해지희망일에 계약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단,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계약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다.
- ②. “전기사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전기사용계약” 해지합의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도해지는 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 월 단위로 해지 처리된다.
- ④. 출자금을 포함한 전체 가입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만 가능하며, 분할해지는 불가하다.

제14조(“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전기사용자”는 협동조합 탈퇴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체결된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해지절차는 제13조제②항을 준용한다.
- ②.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사용자”가 제19조에 따른 요금 납부를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
2. 미납 시 발생하는 미납전기요금 및 연체료를 차감한 금액이 출자금의 3배 이하(300,000원)가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 미납 시 가입금액에서 미납요금분이 차감되며, 출자금의 3배 이하(300,000원)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 나. “중개사업자”는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 다. 해지예정 통보 후라도 미납금액을 납부할 경우 “전기사용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③. “전기사용자”가 주택용 전력 외 별도의 전기 계약종별로 변경하는 경우
- ④. 이사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장소가 “전기사용계약”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 ⑤.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

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 기타 전기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 ⑥.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하는 경우

제15조(해지환급금)

- ①. 중도해지수수료는 $[가입금액 \times 1.5\% \times (연장만기일수 - 진행일수) \div 연장만기일수]$ 이며, “중개사업자”는 해지처리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전기사용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제한 가입금액과 계약해지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2%의 예치이자를 지급한다.
 1. “전기사용자”의 불가항력의 이유(사망)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12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 해지 후 재신청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잔여 가입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 가. 잔여 가입금액은 $[가입금액 + 전기요금 누적 미할인액 - 미납 전기요금 - 연체료]$ 로 계산한다.
 - 나. 전기요금 누적 미할인액은 누진컷모뎀 계약개시일과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입금액별 할인 고정액이 누적 적립되었으나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서 할인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전기사용자”가 협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라 조합원 탈퇴 시 지급해야 하는 탈퇴환급금 법령규정에 따른다.
 1.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상계처리한 후 탈퇴환급금을 지급한다.
- ③.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라 총회를 통한 결산 후 탈퇴환급금을 공시한다.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후의 채권·채무)

- ①. 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제17조(불가항력적인 해지)

- ①. “규제특례”가 연장되지 못하거나, 해제될 경우 서비스 중단 6개월 내에 “중개사업자”가 통보 후 불가항력적인 해지로 적용한다.
- ②. “중개사업자”는 제①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전기사용자”의 가입금액 반환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수반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제3장 계량 및 요금 정산

제18조(계량)

- ①. “전기사용자”의 월별 전기사용량 계량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제69조(검침일),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 제71조(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에 따른 계량값으로 한다.
 1. “전기사용자”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중개사업자”가 지정한 매월 특정일에 원격검침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기사용장소의 월별 원격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사용자”의 월별 전기사용량을 “중개사업자”가 지정한 매월 특정일에 방문검침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제2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방문검침일을 특정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전기사용자”의 자가검침을 통해 월별 전기사용량을 검침한다. 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중개사업자”가 지정한 매월 특정일에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량 검침값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기계기 원격검침값으로 한다.
- ③. 가입금액별로 할인되는 월별 고정액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사용계약” 기간 동안 동일금액이 유지된다.
 1. 가입금액 200만원 : 월 16,000원 할인
 2. 가입금액 400만원 : 월 32,000원 할인
 3. 가입금액 600만원 : 월 48,000원 할인
 4. 가입금액 800만원 : 월 64,000원 할인
 5. 가입금액 1,000만원 : 월 80,000원 할인
- ④. “전기사용계약” 기간 중 “전기사용자”의 연체 등으로 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할인되는 월별 고정액은 [잔여 가입금액 * 0.6%] 으로 한다.

제19조(요금의 계산)

- ①. 제18조제①항의 월별 전기사용량에서 제18조제③항의 “전기사용자”의 월 “태양광 전력” 발전량을 제외한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가 가입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전력 요금제를 따른다.
- ②.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경우, 기존의 할인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 ③. 자동납부 및 인터넷, 모바일 할인 등 “전기사용자”의 기존 청구·수납 관련 한국전력공사 할인혜택은 “전기사용자”의 월 전기요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전기사용자”의 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한다.
 1. “전기사용자”의 정기 검침일
 2.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 ②. “전기사용자”는 제①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중개사업자”가 “전기사용자”별로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에 제18조에 따라 계산된 요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중개사업자”는 납기일의 10일 전까지 요금 청구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송달한다.
- ③. 한 명의 “전기사용자”가 여러 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기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전기사용자”는 “플랫폼”이나 인터넷, 전화의 방법으로 요금청구 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전기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22조(요금의 납부방법)

- ①. 전기요금의 납부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한다.
 1. “전기사용자”의 요금청구서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송달한다.
 2. “전기사용자”의 요금은 “중개사업자”가 지정한 특정일에 자동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중개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으로 납부방법이 추가될 수 있다.
 3. “중개사업자”가 지정한 특정일에 자동이체 출금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동이체 출금이 시도되며, 기타의 방법으로도 요금의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한다.
- ②. “중개사업자”는 제18조제①항에 해당하는 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제18조제②항에 해당하는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각 납부분에 대하여 지불대행한다.
- ③. 요금제별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 공급량은 발전소 여건 및 “중개사업자”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송배전망 사업자가 부과하는 비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23조(연체료)

- ①. 제20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에 따른 납기일을 경과하여 요금의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한다.
- ②. 제①항에 따라 발생한 연체료는 미납요금의 1.5%이며,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까지 미납할 경우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미납된 전기요금과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③. 제15조제①항제3호가목에 따른 잔여 가입금액이 출자금의 3배 이하(300,000원)가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4조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로 처리되며, “중개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잔여 가입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제하고 정산한다.

제4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24조(개인정보의 활용)

- ①. “중개사업자”는 “전기사용계약”,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로 한정한다.
- ②.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전기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협동조합 전기 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③. 수집한 “전기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일정기간 후에는 폐기한다.

제25조(손해배상)

- ①. “중개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상대방이 제12조에 따른 계약 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손해배상의 면책)

- ①. “중개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계약상 의무를 변경함으로써 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지 1호 서식] 전기사용계약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제출 불가 시 하단 양식 사용)

전기사용계약서			
전기판매사업자			
대표자명	○ ○ ○	전 화	010 - 0000 - 0000
상 호	경북우리집RE100 제2협동조합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77번길 4-7		
발전소 위치 ¹⁾			
발전소 명 ²⁾ ()	태양광 설비용량	상업운전 시작(예정)일	
	kW	20 . .	
전기사용자			
가입자명	○ ○ ○	전화	010 - 0000 - 0000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소속 협동조합명	경북우리집 RE100 제2협동조합		
주 소 ³⁾			
연계 발전소 명 ()	가입금액(예치금)		
	☐ 2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자동이체 (* 본인명의)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생년월일 :		
계약내용			
계약기간 ⁴⁾	누진컷모했 계약개시일(가입금액 최초 납입일 익월 1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체결일			
귀 협동조합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협동조합에 통지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상속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협동조합에 통지 하겠습니다. •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협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에 따릅니다.			

[별지 2호 서식]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북우리집RE100 제2협동조합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 연락처, 주거형태, 월 사용 전력량, 월 청구내역, 월 청구요금, 고객사항(계약종별, 정기검침일, 계량기번호, 계량기배수, 계약전력, 가구 수, TV대수, 역률), 미납금액 보유 여부, AMI시스템 보유 여부, 계량기 당월 및 전월 지침, 납기일, 복지할인제도 적용여부, 전기사용량(당월, 전년동월, 연간평균) 등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전기사용계약 신청,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등	전기사용계약 신청,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계약 신청,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한국전력공사 고객명, 주소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전기사용계약 신청 및 해지, 변경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기타 협동조합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5년까지 보유합니다. 단, 채권, 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 채무 정산 시까지 보유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제공 및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지 3호 서식] 전기사용계약 해지합의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제출 불가 시 하단 양식 사용)

전기사용계약 해지 합의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20 . . 에 합의하여 “중개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다.

- 아 래 -

1. 해지 대상

대상명	전기사용자명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계약체결일	20 . .
당사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2. 계약 해지 사유:

3. 계약 해지 일시:

가. 20 . . 0시

나. 만일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지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중개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새로 작성된 합의 해지서를 협동조합에게 제출한다.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원본 3부에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해지일 15일 전까지 “중개사업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전기판매사업자: (인) 전기사용자 : (인)

(주소)

(주소)